

춘천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331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수

변 론 종 결 2023. 5. 4.

판 결 선 고 2023. 5. 25.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 6. 22. 선고 2020가단587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① 피고와 C 사이의 2020. 5. 11.자 재산분할협의를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이 사건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위 5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 청구취지

① 피고와 C 사이에 원주시 H아파트 I호에 관하여 2019. 7.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 사건 대여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2면 7행부터 7면 9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13행의 “이 법원”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2020. 7. 10. 편의점 월 수입금 6,000,000원”을, “2020. 7. 10. 편의점 월 수입금 7,500,000원”으로, 10행의 “부담하고”를 “보관하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6행의 “G”를 “C”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9행의 “재산분할”을 삭제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C은 2007. 4. 3. 원주시 H아파트 I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같은 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 C은 J으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9. 5.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J, 채무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3) 피고는 2019. 7. 3. J에게 C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38980호로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와 접수 제38981호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2019. 7. 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대여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 제2항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은 제소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위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한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종전의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27544 판결,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가 2021. 12. 17. 제1심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C이 피고에게 금원을 송금한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2022. 8. 18. 이 법원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적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21. 12. 17.자 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하되었고, 2022. 8. 18.자 항소취지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새롭게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2022. 8. 18.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에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늦어도 원고가 2020. 10.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때라고 할 수 있고,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8. 18.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보라, 판사 고병용